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 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7. 18. 청구인에게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운행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3. 9. ○○○○○주식회사로부터 임차받은 ○○○○○○○○ ○○○ 승용차로 카풀앱을 통해 모집한 손님 김○○을 ○○○○역에서 ○○역까지 태워다 주고 그 운송비로 3,045원을 받아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 받은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것이 민원인의 신고로 적발되었고, 민원인의 신고를 받은 서울특별시 ○○○○○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자가용자동차 불법 유상운송 조치의뢰를 통보받은 인천광역시 ○○○○○장이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7. 4. 24.외 2차례 청구인에게 위반사항에 대하여 운행정지 180일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며, 2017. 6. 23.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2017. 7. 18. 청구인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을 이유로 운행정지 90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스마트폰 어플인 “○○”를 통해 출퇴근하는 사람들에게 카풀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적발된바, “○○”에서 공지하기를 출퇴근 시간(오전 6~11시, 오후 5~12시)에 카풀의 목적으로 사람을 운송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는 글을 믿고 카풀을 하게 된 것이므로 행정처분의 대상은 ○○가 되어야 할 것이며, 개

인사업자로 여러 거래처를 다녀야 하므로 차량이 없으면 힘들고 빌린 돈도 많아 경제적으로 힘든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선처해 달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이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대하여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운행정지 180일의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을 수용하여 운행정지 90일의 처분을 한 점 등 제반사정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범죄사실이 명백하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및 제83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 [별표 3]

나. 사실관계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17. 3. 9. ○○○○○주식회사로부터 임차받은 ○○○○○○○○○○○ 승용차로 카풀앱을 통해 모집한 손님 김○○을 ○○○○역에서 ○○역까지 태워 주고 그 운송비로 3,045원을 받아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 받은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민원인의 신고로 서울특별시(○○○○과)에 접수되었으며, 위 사항을 통보받은 인천광역시(○○○○과)는 2017. 4. 1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하여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 조치를 의뢰하였다.

2) 피청구인은 2017. 4. 24., 2017. 5. 15., 2017. 6. 7. 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행정지 180일 처분을 사전통지 하였다.

3) 청구인은 2017. 6. 7.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불기소결정서상의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는 다음과 같다.

I. 피의자 : 청구인

II. 죄 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III. 주 문 :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IV.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

2017. 3. 9. ○○○○○주식회사로부터 임차받은 ○○○○○○○○ ○○ 승용차로 카플 앱을 통해 모집한 손님 김○○을 ○○○○역에서 ○○역까지 태워다 주고 그 운송비로 3,045원을 받아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받은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가 카플 앱을 통해 소개받은 손님들을 태워다 주고 일정 비용을 받은 것으로 피의자가 유상운송 일을 한지가 4일에 불과한 점, 운송기간 및 운송요금 규모 등에 비추어 비교적 사안 중하지 아니한 점,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는 점등을 참작한다.

○ 기소를 유예한다.

4) 피청구인은 2017. 7. 18. 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제 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처분의 2분의 1을 감경한 운행정지 90일(2017. 7. 29. ~ 10. 26.)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다. 판 단

1)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에서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 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퇴근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는 자가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의 [별표 3]의 제2호 개별기준에서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에는 1차위반시 운행정지 180일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 일반기준 라. 2)에서 처분관할관청은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 일반기준 마에서 처분관할관청은 다목에 따라 처분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경우 중 운행정지의 경우에는 처분기준일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일수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인천지방검찰청 불기소결정서상의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를 보면 청구인은 ○○○○○주식회사로부터 ○○ 승용차를 임차받은 자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7. 3. 9. 카풀 앱을 통해 모집한 손님 김○○을 ○○○○역에서 ○○○까지 태워다 주고 그 운송비로 3,045원을 받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아 위법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2017. 6. 7.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판단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를 근거로 운행정지 기간을 당초 180일에서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여 운행정지 90일의 행정처분을 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은 스마트폰 어플인 “○○”를 통해 출퇴근하는 사람들에게 카풀서비스를 제공하다 적발된 바, “○○”에서 공지하기를 출퇴근 시간(오전 6~11시, 오후 5~12시)에 카풀의 목적으로 사람을 운송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는 글을 믿고 카풀을 하게 된 것이므로 행정처분의 대상은 “○○”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에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 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퇴근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출퇴근 시에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이지 카풀의 형태를 이용해 출퇴근시간대에 유상운송을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합법과 통념에 벗어나 유상운송을 할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위반자에 대하여 처벌이 가능하고, 이에 관한 사항은 “○○”의 2017. 4. 24. ‘불법유상운송 사례 및 주의 안내’ 게시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1991. 1. 29. 선고 90다11028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이 증거서류로 제출한 운행내역서를 보면, 사건 당일 적발된 건 이후인 2017. 4. 5.에 출발 08:09 ~ 도착 08:40 거리 8km, 출발 10:42 ~ 도착 11:40 거리 19km인 자료를 볼 때, 청구인은 출퇴근시간대에 카풀의 형식을 이용해 유상운송을 한 것으로 판단되어, 관계법령에서 유상운송을 허용한 출근 시에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함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